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57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11

제출자 : 달성



### 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개정이유

「유통산업발전법」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 전통산업보존구역의 확대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·변경 및 취소에 관한 규정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, 달성군 행정기구의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기업의 상생·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범위를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 
(안 제11조제1항)
- 나.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·변경 및 취소에 관한 규정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(부칙 안 제2조)

- 다. 「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」의 위원인 군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“5급 공무원”을 “4급 공무원”으로 변경(안 제8조제3항2호)
- 라. 「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」의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“6급 공무원”을 “5급 공무원”으로 변경(안 제8조제4항)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유통산업발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조치 없음
- 다. 입법예고 : 2011. 9. 14. ~ 10. 4. - 특기할 사항 없음

달성군 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 
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2호 중 “5급 공무원” 을 “4급 공무원” 으로 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6급 공무원” 을 “5급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500미터” 를 “1킬로미터” 로 한다.

조례 제2139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  
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중 “2013년 11월 23일까지” 를  
“2015년 11월 23일까지” 로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통산업보존구역 확대에 따른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 
조례 시행당시 해당 전통산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  
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  
으로 본다.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.운영) ① ~ ②(생략)</p> <p>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</p> <p>1. (생략) 가 ~ 나 (생략)</p> <p>2. 군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<u>5급 공무원</u></p> <p>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<u>6급 공무원</u>으로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11조(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)</p> <p>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<u>500미터</u>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·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 ~ 2 (생략)</p> <p>②~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조례 제2139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</b></p> <p>제2조(유효기간) 제9조제5호, 제6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<u>2013년 11월 23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</p>	<p>제8조(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.운영) ① ~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가 ~ 나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4급 공무원</u></p> <p>④ ----- ----- <u>5급 공무원</u>-----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1킬로미터</u> ----- -----</p> <p>1 ~ 2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조례 제2139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</b></p> <p>제2조(유효기간)----- ----- ----- <u>2015년 11월 23일까지</u> ----- -----</p>

## 관계 법령

### **유통산업발전법**

제13조의3(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 
<개정 2011.6.30>

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,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0.11.24]

[법률 제10398호(2010.11.24)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]